

2007. 7. 20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운영상황보고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상황보고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 정립
-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

## □ 운영개요

### ○ 위원회구성

- 일 시 : 2007. 3. 6(제113회 임시회)
- 명 칭 : 충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구 성 : 충주시의회의원7명
  - 박인규의원(위원장), 강명권의원(간사), 김경숙의원, 심재연의원, 양승모의원, 윤범로의원, 지덕기의원

### ○ 운 영 : 2007. 3. 6 - 9. 5 중 6. 30까지

### ○ 정비대상 : 206건

### ○ 정비건수 : 조례 10건

-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조례검토
- 중점검토사항
  -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및 법령근거 여부
  -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지 여부
  - 기타 현실 부합 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해석상의 문제 등
-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견 확인

## □ 운영경과

- 제113회임시회(2007. 3. 6) : 조례특위구성
- 제 1차 위원회(2007. 3. 6) : 위원장 간사선임
- 제 2차 위원회(2007. 3.29) : 조례정비 및 검토
- 제 3차 위원회(2007. 4. 4) : 조례정비 및 검토
- 제 4차 위원회(2007. 4.11) : 조례정비 및 검토
- 제 5차 위원회(2007. 5. 2) : 조례정비 및 검토
- 제 6차 위원회(2007. 7. 4) : 조례정비 초안 작성 및 검토
- 제 7차 위원회(2007. 7.10) : 상황보고서 채택

## □ 조례정비결과

-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2
----------	-----

발의일시: 2007. 7. .

발 의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 제안이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 지방차지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 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비건수 : 10건
- 유형별 정비현황(세부내역 : “붙임” 개정조례안 참조)
  - 기구 및 업무변경 : 3건
  - 법령개정 : 5건
  - 현실 부적합 : 1건
  - 내용 불부합 : 1건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4.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5. 붙 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1부. 끝.

##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포상조례의 개정)** 충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포상조례”를 “충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조의1제3항 중 “서무”를 “시정”으로 한다.

**제2조(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 15조”로 하고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76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3조(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4조(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개정)**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6조(충주시 시세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한다.

제44조 중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7조(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8조(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충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와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9조(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충주시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연수과장”을 “기술연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수기획”을 “지도기획”으로, “생활개선업무담당지도사”를 “생활기술업무담당지도사”로, “기술연수”를 “인력육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수과장”을 “기술연수과장”으로 한다.

제10조(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를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지방재정법」 제33조- -

○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지방재정법」 제17조 -

○ 충주시 시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4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① - - - - - - - - - - 제42조 - - - - - - - - - - - - - - -
제44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4조(가산세액) - - - - - 제42조 및 제43조- -

○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 - - - - - - - - - - - - - - - -

○ 충주시보보증채무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 - - - - - - - - -

○ 충주시농촌전문이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목적)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과장으로 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조직체의 임원 3인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농촌지도자회는 연수기획업무담당지도사,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업무담당지도사를, 4H후원회는 기술연수업무담당지도사를 각각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목적)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기술연수과장</u> - - - - - ③ - - - - - - - - - - <u>지도기획</u> - - - - - - - - - - <u>생활기술업무담당지도사</u> - - - - - - - - - - <u>인력육성</u> - - - - - - - - - -
제13조(회계관리)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연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과 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제13조(회계관리)①(현행과 같음) ② - - - - - <u>기술연수과장</u> - - - - - - - - - -

○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람)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li> <li>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li> <li>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li> </ol>	<p>제3조(관람)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p>